

제344회 정례회  
2015.12.16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## 3. 제안이유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 신설로 양성평등사회 실현 추진기반 마련

## 4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 : 여성정책 기본조례 → 양성평등 기본조례
-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(안 제6조)
- 여성정책위원회 →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(안 제7조)
- 성 주류화 조치 명확화(안 제12조 ~ 제15조)
  - 성별영향분석평가, 성인지예산·결산, 성인지통계, 성인지교육
- 정책결정과정 참여(안 제17조)
  -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 민·관 거버넌스 기구를 둘 수 있음
-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(안 제19조)
- 여성주간 →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 변경(안 제22조)
- 여성·가족친화도 조성을 위한 도의 노력(안 제23조)
- 여성발전기금 →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(안 제25조)
- 양성평등 촉진, 여성 인권보호과 복지증진 활동 비영리법인, 비영리

민간단체, 거버넌스기구 활동에 필요한 행·재정지원 가능(안 제35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(‘14.5.28)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주요 개정내용은,
  - 1) 조례명을 ‘여성정책 기본조례’에서 ‘양성평등 기본조례’로 변경하고,
  - 2) 5년 단위의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,
  - 3) ‘여성정책위원회’ 명칭을 ‘양성평등위원회’로 변경하고,
  - 4) 안 제1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, 성인지 예·결산, 성인지 통계,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조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
  - 5) ‘여성주간’을 ‘양성평등주간’으로 변경하고,
  - 6) 안 제23조에 여성·가족친화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노력을 명시하였음.
  - 7) 또한, ‘여성발전기금’을 ‘양성평등기금’으로 변경하고,
  - 8) 안 제35조에 양성평등 및 여성 인권보호,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및 안 제17조제3항에 따른 민·관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,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음 규정들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함.
  - 1) 안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‘민·관 거버넌스 기구’는 양성평등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목적만 명시되어 있을 뿐임.
    - 정책제안 활성화는 공모방식을 활용하고 있고, 여성정책관실 또는 여성단체 등을 정책제안 수렴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, 양성평등 위원회를 정책제안 활성화 논의 및 평가를 위한 민·관 기구로 활용할

수 있는 바, 기능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.

- 따라서, 별도의 '민·관 거버넌스 기구' 가 필요한 이유와 구성, 기능, 운영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2) 안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'여성고용대책위원회' 및 '사무국'의 경우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서라는 목적만 명시되어 있을 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, 기능에 관한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.

- 따라서, 위원회와 사무국의 기능, 구성 및 운영방식(직영, 위탁 등)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

- 또한, 여성고용대책위원회 구성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, 공약실천계획을 보면,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로 연 5천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, 비용추계(5년 간)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.

※ 참고자료. 민선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(여성고용대책위원회)

○ 다음 규정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함

1) 안 제10조제2항 규정

제10조(회의)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는 ~ .

● 문제점 (명확한 규정 필요)

- 안 제10조제2항에는 정기회를 '연 1회 이상 개최'로 규정하고 있으나,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 규정할 경우 정기회 개최는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● 수정방향

- 기존 「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」와 동일하게 '연 2회'로 수정

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 2) 안 제17조 규정

**제17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** 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 
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  
③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민·관 거버넌스 기구를 둘 수 있다.

### ● 문제점 (조문 제목과 규정 불일치)

- 안 제17조 조문 제목인 “정책결정과정 참여”는 양성이 정책결정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토록하기 위한 시책마련을 규정하는 것으로,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의 참여 성비 및 관리직위 성별 균형 임용에 대한 규정을 의미함.
- 따라서, 조문제목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.

### ● 수정방향

- 1안) 조문 제목을 수정하거나,
- 2안) 제2항과 제3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# ※ 서울시 조문 참조

**제14조(시정참여 확대)**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%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
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·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시민참여)**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,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3) 안 제28조 규정

제28조(기금운용심의)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
- 문제점 (약어사용)

- 안 제28조 본문의 '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'는 안 제7조 규정에 따라 약어사용이 타당함.

- 수정방향

- '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'를 '위원회' 로 수정함.

### 4) 안 제34조제3항 규정

제34조(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등)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명칭부여 및 변경권한을 갖는다.

- 문제점 (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우려)

-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상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센터의 명칭부여 및 변경권한 부여 규정은 없는 바, 단체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.

- 수정방향

- 본 항의 삭제가 바람직함.

## 5) 부칙 제4조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」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## ● 문제점 (조항 존치 필요성 여부)

- '다른 조례와의 관계' 규정은 다른 조례에서 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, 해석 시 개정된 본 조례를 이용토록 규정하는 것일 뿐, 다른 조례에서의 용어 개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바,
- 본 조례를 인용 또는 준용하는 다른 조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, 만일 다른 조례의 용어 또는 인용조문의 개정을 위해서는 부칙에 '다른 조례의 개정' 조문을 두는 것이 타당함.

### ● 수정방향 : 필요성 확인 후 본 조문의 존치, 삭제, 수정 결정필요

## 6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

- ① 제11조 조문 제목, 본문, 제3호 : '해촉' → '위촉 해제'
- ② 제11조 본문 : '~ 발생 한 때에는' → '~ 발생하였을 때에는'
- ③ 제20조제2항 : '강구' → '마련'
- ④ 제21조제2항 : '~ 발생 한 때에는' → '~ 발생하였을 때에는'
- ⑤ 제29조제3항 : '해촉' → '위촉 해제'

□ 참고자료 . 민선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p.198~199

< 정상추진 >

## 86.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

부 서 명	여성정책관실	과장	변혜정 (☎ 3910)	여성권익팀장	배정원 (☎ 3931)
창조경제	임기내	예산	담당자	신영희 (☎ 3932)	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~ 2018년
- 사업대상 : 도내 여성 구직자 등
- 사업내용

#### ①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

-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: 위원장 도지사 (※ 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)
  - 기 능 : 희망일터 사업 선정 및 예산승인 등 운영제반 심의·의결
  - ※ 전담인력 총원필요(1명) : 여성고용대책위원회·실무협의회, 희망일터사업 전담
- 가칭)여성고용대책 실무협의회(사무국 설치·운영)
  - 협의회장 : 도 여성정책관(위원 : 정책개발 분과위원장, 사무국 직원 등)
  - 기 능 : 여성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시행

#### < 실무협의회 운영 사무국 설치 >

- 조 직 : 여성인력관련 기관에 사무국 설치·운영
- 역 할
  - 조직전반 및 분과운영 지원
  - 경력단절여성 구인·구직 수요조사 및 인재뱅크 운영
  - 여성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등

- 가칭)여성고용 정책개발위원회 : 3개 분과(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)
  - 연구조사분과 : 충북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수립
  - 직업교육·창업분과 :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·보급(시군), 시군 순회 취업·창업스쿨 운영, 여성창업 컨설팅 제공 등
  - 일자리개발 및 지원분과 : 사회적(취약계층) 일자리 모델개발 및 중단기 계획수립, 맞춤형 여성 친화적 사회적 기업 육성기반 마련 등

#### ② 충북형 여성희망일터 지원 사업

-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운영 : 연0.5억



- 충북형 여성희망일터 사업 : 연1.5억(여성일자리 사업 공모로 선정)
- 여성 구인·구직 노동수요 조사 및 유망직종 개발 : 0.5억(격년실시)

○ 사업비 : 총 5.5억원 (도비 100%)

## □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실적

(단위 : 억원)

구분	투 자 계 획								투 자 액 확 보						
	계	기투자	14년	15년	16년	17년	18년	19년 이후	계	기투자	14년	15년	16년	17년	18년
계	5.5				1	2	2.5								
국비															
도비	5.5				1	2	2.5								
시군비				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			

## □ 계획대비 추진실적

### 1)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

- 2014년도(7월~12월) 추진계획 : 해당없음
- 2014년도(7월~12월) 추진실적 : 해당없음
- 2015년도 상반기 추진계획
  - 여성고용대책위원회 구성·운영 및 희망일터 사업 추진방향 의견수렴
  - 효율적인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협의기구인 충북여성인력개발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속
-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
  - 여성새일센터 취업지원협의체 회의시 여성고용대책위원회 구성·운영 및 희망일터 사업 추진방향 의견수렴 : '15. 3. 26/충북지식산업진흥원/12명 참석(여성일자리 관련기관 대표 및 전문가 등)
  - 효율적인 여성일자리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「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」 정책연구과제 의뢰 : '15년 6월

## 2) 연도별 홍보(보도)실적

- 2014년도(7월~12월) 실적 : 해당없음
- 2015년도 상반기 실적 : 해당없음

## 3) 연도별 도민과의 소통실적

- 2014년도(7월~12월) 실적 : 해당없음
- 2015년도 상반기 실적
  - 여성고용대책위원회 구성·운영 및 희망일터 사업 추진방향 의  
견수렴('15.3.26/충북지식산업진흥원/12명)

## □ 문제점 및 대책

- 도지사 직속의 위원회로 위원장 격에 맞는 부위원장·위원 구성 및 위원회 역할·기능(의결·협의사항 등)안 마련
- 현) 충북여성인력개발협의회 위원 중 일부위원을 경제계 대표로 격상한 구성(안)으로 의견수렴 후 방침결정
-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(안) 제정

## □ 향후계획

- 여성일자리포럼 등을 통한 충북형 희망일터지원 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 의견수렴
- 2016년 예산확보를 위한 「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」 추진 기본계획 수립

## □ 기대효과

- 도내 여성인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활용을 통해 여성일자리 관련 업무의 효과성 극대화
- 충북형 여성희망일터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여건에 적합한 여성

의 신규일자리 및 유망직종 발굴로 여성고용률 제고